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-150호, 2009. 06. 0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

(1) 면류 중 국수, 냉면,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53호, 2009. 06. 05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·축·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, 부정유해물질 불검출 기준 신설,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의 과학적,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,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식품개발 등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」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 (별표 4)

(1)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되어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.

(2) 이민옥타딘 등 4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프로헥사디온-칼슘 잔류허용기준 신설

(3)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

나.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 및 시험법 개정[제 10. 15.] 및 (별표 7)